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익법인 임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으로 완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145호)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3. 관계기관 의견	7

I .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부
2. 제 안 일 : 2024. 7. 23.
3. 회 부 일 : 2024. 7. 24.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
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 등)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u>1. 미성년자</u> 2. ~ 5. (생략) ⑦ ~ ⑨ (생략)	제5조(임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1. 18세 미만인 사람</u> 2. ~ 5.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최근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¹⁾.

1)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조정(25세 이상→18세 이상, 공직선거법, '22.1.18.시행),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연령 하향(18세 이상→16세 이상, 정당법, '22.1.21.시행),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완화(20세 이상→18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24.1.1.시행)

이와 같은 입법 상황에 발맞추어, 정부는 청년 등의 취업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자격취득, 직종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연령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법상 미성년자로 규정된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인 자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참고

연령제한 완화(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관련 일괄정비 목록

순번	소관부처	유형	직종 등 (법령 및 조항)	제도 현황 등	추진 현황
1	국가 유산청	취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응시요건이 중학교 졸업 이상, 기능사 이상 자격취득 등으로 미성년자도 응시요건을 갖춰 자격취득 가능	공포 (‘24. 10. 22.)
2	여성 가족부		아이돌보미 활동 연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별도 자격요건 없이 교육수료(80시간), 적성검사, 현장실습 완료 후 아이돌보미 가능	상임위 회부
3	보건 복지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연령 (노후준비 지원법 제12조)	별도 자격요건 없이 교육훈련과정(65시간) 수강 및 평가 이수 후 활동가능	공포 (‘24. 9. 20.)
4	해양 수산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 연령 (항로표지법 제21조)	사설항로표지 소유자는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설항로표지관리원으로 채용 가능	상임위 소위 회부
5	경찰청	사회 참여	자율방범대원 활동 연령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경찰서장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촉	상임위 회부
6	법무부		공익법인임원 활동 연령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익법인의 운영 목적* 등을 고려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상임위 회부

순번	소관부처	유형	직종 등 (법령 및 조항)	제도 현황 등	추진 현황
7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연령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해당 재단법인에는 미성년자도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상임위 회부
8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 연령 (한·아프리카재단법 제9조)	한·아프리카재단은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미성년자도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상임위 회부

출처: 법제처

개정안은 미성년자 연령제한 개선 관련 개정안 중 하나로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임.

현재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정도의 연령에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²⁾를 얻어 이사에 취임할 수 있으며, 이사 지위의 취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민법 제8조제1항의 특정한 영업에 대한 허락으로 보아 이사 지위 취득 이후 이사로서의 개별 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³⁾

2)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상업등기실무」, 2017, 법원행정처, 159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등 제한능력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와 비상장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그 자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점(민법 제117조)을 고려하면 등기실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정도의 연령에 있는 미성년자의 이사 취임등기신청을 수리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임원이 되어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공익법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기관⁴⁾이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적용⁵⁾되는데,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참고자료)를 통해 살펴본 학술·장학·기타 공익법인의 토지·건물·주식·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의사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18세 미성년자에게 공익법인의 재산 관리,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⁶⁾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참고자료] 2021년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자산현황

		합계	사회복지	교육	학술·장학	예술문화	의료	기타
		법인수 (개)	법인수 (개)	법인수 (개)	법인수 (개)	법인수 (개)	법인수 (개)	법인수 (개)
총자산 규모별	소계	11,203	2,988	1,832	2,696	784	1,102	1,801
	3억 이하	2,535	538	286	518	224	378	591
	5억 이하	594	212	62	128	61	7	124
	10억 이하	1,609	513	117	608	96	10	265
	20억 이하	1,454	498	142	470	115	33	196
	30억 이하	831	340	84	213	60	38	96
	50억 이하	967	343	159	210	73	63	119
	100억 이하	1,221	334	254	217	71	210	135
	500억 이하	1,451	182	449	277	68	305	170
	1000억 이하	233	16	107	23	8	33	46
	1000억 초과	308	12	172	32	8	25	59

출처: 통계청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3.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령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통설은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연령 결격사유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하여 공익법인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임. 또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7),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8) 등 다수의 입법례 역시 연령을 기준으로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설명함.

문 의 처
02)6788-5054

-
- 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